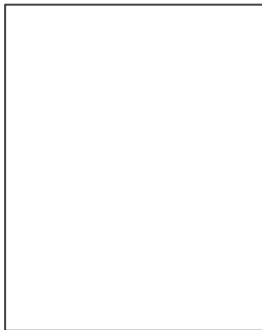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1. 서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보육서비스 공급자와 아동 및 부모 사이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장치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 일선기관에 이르기까지의 보육관련 행정조직과 보육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적·사적 조직의 구조적 배열을 의미한다. 보육사업의 정책적 지침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냐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난다.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보육사업확충 3개년 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적 환경이 이에 맞게 변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현 시점이 보



徐文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마치고 질적 향상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구의 구성 및 기능 등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그리고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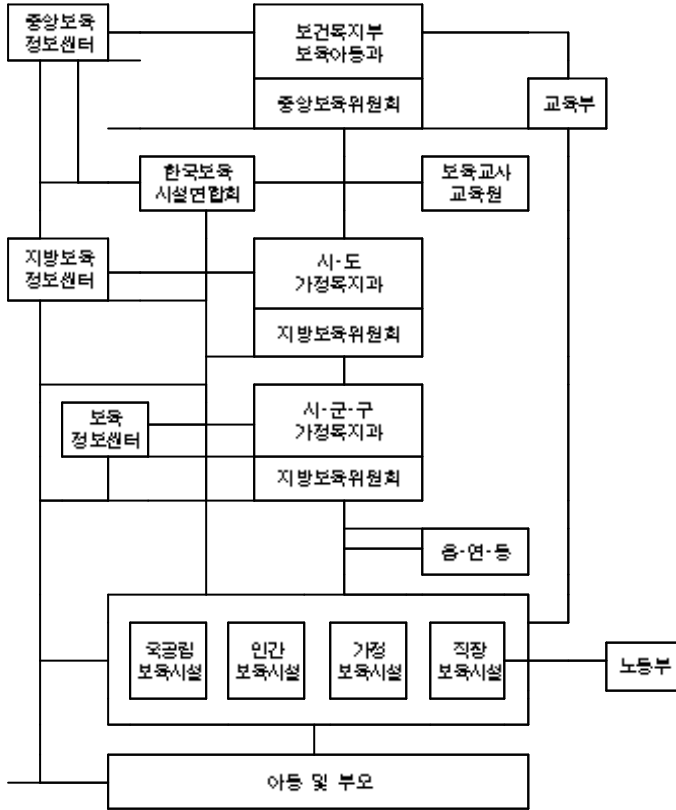
현행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1995년 이전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담당부서인 아동복지과가 1997년 6월 보육아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수직적인 전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동안 보육계를 두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두고 있다. 이 외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장보육시설의 일부 업무를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육 행정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첫째, 보육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과 통제력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행정적인 편의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보육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둘째, 인력 및 조직의 부적절성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담당 인력이 보육관련 행정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은 보육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교체도 잦아서, 전달체계상 효과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단편성, 비접근성, 비연속성 등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의 부족이다. 현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찰

그림 1.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도



현 전달체계는 대부분의 권한과 통제력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적인 편의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보육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국공립 및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지도·점검 및 예산지원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마저 없으며, 교육부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학지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도 노동부로부터 예산지원에 따른 감사만을 받는다.

덧붙여,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다. 법에는 보건복지

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육위원회를 두고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위원회와 같이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혜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나. 보육집행체계

1998년 6월 현재 보육시설수는 17,127개소로 정원은 682,256명이고, 현원이 545,859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율은 80%이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형평성과 접근성, 통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점만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립시설 등 운영의 주체가 공공인 시설과 민간시설의 불균형 구조 및 직장보육시설이 적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1998년 7.2%에 불과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0.9%로 1994년에 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12.88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30.70이다. 일본의 경우 1997년 4월 현재 인가된 보육시설의 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비율이 58.42이라는 점과 비교하여도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이 너무 민간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아동도 1998년 3월 현재 국공립시설 16.8%, 법인시설 25.5%로 공공시설 보육아동 비율이 42.3%로, 공공시설보다는 민간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수가 더 많다. 1994년에는 국공립시설 32.3%, 법인시설 28.9%로 공공시설 보육아동 비율이 61.2%였다.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성을 띤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서 공보육의 1차적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많지 않은 국공립시설 중 대형보육시설이 중산층 거주지

1) 일본은 1997년 4월 현재 인가된 시설이 총 22,401개소이며, 이 중 13,074개소가 공립시설임 (일본 후생성, 『1997 후생백서』).

역에 설치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이종으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171개소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기업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표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수 현황(1998년)
(단위: 개소, %)

연도	전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개인	단체	법인	소계		
1994	6,975 (100.0)	983 (14.2)	2,267 (32.5)	17 (0.3)	807 (11.6)	3,901 (44.3)	37 (0.5)	2,864 (41.1)
1998	17,127 (100.0)	1,225 (7.2)	7,133 (41.6)	201 (1.2)	1,867 (10.9)	9,201 (53.7)	171 (0.9)	6,536 (38.1)

자료: [http://www. Educare.or.kr](http://www.Educare.or.kr).

둘째, 보육시설의 지역적 접근성의 불균형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전국의 3,587개의 읍·면·동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동은 809개소(22.6%)이고, 유치원도 없고 보육시설도 없는 동은 60개소(1.7%)이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모들의 특별보육 욕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영아 및 장애아보육 촉진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1998년 3월 현재 영아전담시설은 28개소로 0.16%에 불과하고, 장애아보육은 전담시설 28개소, 통합 63개소인 91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0.53%만이 장애아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의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일시보육 등은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방과후 보육도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

넷째,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통합성 정도를 보면, 자원봉사자로 학부모 중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대학실습생을 보조인력으로, 중고등학생을 청소 등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 국공립 보육시설 중 대형보육시설이 중산층 거주지역에 설치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보육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이종으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표 2. 도시·농어촌 보육시설 정원 및 보육수요(1998년)

(단위: 명,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보육아동정원 ¹⁾	682,256 (100.0)	315,961 (46.3)	292,606 (42.9)	73,689 (10.8)
보육수요아동추계 ²⁾	798,946 (100.0)	377,814 (47.3)	318,392 (39.9)	102,740 (12.8)

주: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임.

2) 대리적 희망보육수요로 여성수, 여성의 취업률, 취업여성의 아동보육 희망률(65.7%)을 곱하여 산출한 것임.

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파출소와 소방서는 방법, 소방훈련협조, 견학 등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보건소는 건강진단, 불소양치사업 등을 때때로 연계하고 있으나 학교, 교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의 연계 체계는 약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경우는 불규칙성이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자원봉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을 세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와도 정기적, 체계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다. 보육지원체계

1) 보육정보센터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하는 단계에 있다.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도 하고 있다. 법에는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두도록 하여 1995년에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광역단체 보육정보센터는 1997년 2개 시에 설치·지원하던 것을 1998년까지 5개시 보육정보센터를 지원하고, 1999년까지는 도단위 보육정보센터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체 정보센터는 자체 또는 보육시설연합회지부 및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연합회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미약하여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육지도원이 보육시설이나 보호자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주체가 공무원 및 민간 등으로 다양하고, 센터장과 보육지도원도 가정복지과나 아동상담소 등의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곳이 많다. 셋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시설기준은 방음장치가 된 33㎡ 이상의 상담실, 방음장치가 된 전화상담실, 10석 이상의 열람좌석과 1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춘 도서실,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설치기준에 부합한 센터는 많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으로는 정보화 시대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이에 맞게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이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에 분포하는 보육시설수와 보육교사수의 비율이 각각 22.3%, 24.7%인데 비하여 보육교사교육원수의 38.6%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다.

3) 보육시설 관련단체

대표적인 보육시설단체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가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 근거를 둔 단체로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모든 보육시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위주의 단체로 평가된다²⁾.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미약하여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육지도원이나 보육시설이나 보호자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제대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2) 조홍식, 「보육시설연합체의 운영문제와 조직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6. 9.

연합회는 1995년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이행하여 보육사업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한국보육교사회는 1985년부터 특정지역 민간 비영리 탁아소와 탁아교사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여 1987년부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활동하다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창설되자 보육교사운동을 새로운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1998년에 개칭하였다.

법정단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시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및 시설관련단체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본고에서는 행정 및 지원체계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행정조직 및 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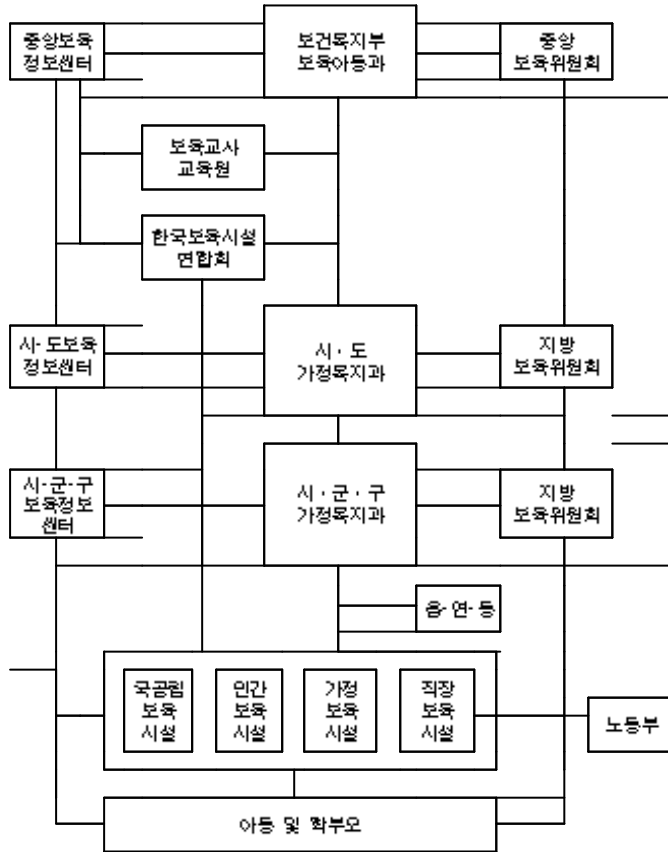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보육관련 행정기구의 확대나 인력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시도 단위에 아동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은 내부지침에 의해서라도 보육전담인력을 두어 연속성을 가지고 보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증제도(Accreditation System)의 도입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 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조치가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약 50개 정도의 원칙으로 구성된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주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유예기간을 준다. 또한 개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증제도

그림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및 시설관련단체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3년간은 시범적으로 보육시설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우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공립보육시설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3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인증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뿐 아니라 인증받기를 원하는 민간시설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장학지도도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하여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보육위원회의 기능 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범적 실시 및 인증제도 업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확대보다는 보육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보육위원회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 형태의 하부조직도 구성되어야 하고, 예산 지원은 물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식으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보육위원회를 『보육심의평가기획단(가칭)』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중앙보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기능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다양화 및 활성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고, 중앙, 광역 및 기초단체 보육정보센터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보육정보센터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다양화

보육정보센터는 첫째로,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육정보센터라는 정보수집 채널을 이용하여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보육관련 통계를 생산, 정책의 기초자료 및 행정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보육사업지침에 명시된 기초통계조차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보육제공자 및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결과의 환류기능을 하여야 한다. 법 개정 등 보육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행정가와 실무담당자의 토론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보육정보센터 주요 기능의 하나이다.

둘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이다. 우선 교재·교구, 프로그램 및 도서 등 보육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개별 보육시설에서 수집하여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검증되고 선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오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육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제·개정, 보육사업지침 등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보육관련 인력은행 및 자원봉사자의 연계체계도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육

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현장감 문제를 주제로 하는 재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는 부모에 대한 지원 기능이다. 먼저 보육시설의 설비, 보육교사 구성, 보육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이용자가 시설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외에 아동보육 및 양육관련 상담 기능, 아동관련 행사 등 관련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가정이나 위탁모의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형태에 대해서도 위탁모 이용희망자와 위탁모의 연계 및 위탁모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육정보센터의 체계화

장기적으로는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인터넷망을 개설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체계의 일원화 및 각급 보육정보센터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보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 NET)은 광역 및 일부 기초단체 보육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나, 광역 및 기초단체 보육정보센터간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급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야 한다.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교구·교재, 프로그램 등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국의 보육시설, 학부모 및 하부단위의 보육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재교육도 광역단체 보육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이 된다. 한편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시설, 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고, 중앙, 광역 및 기초단체 보육정보센터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보육정보센터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회 관련 정보 등 주로 해당지역의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주체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보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운영주체를 다양화하지 말고 일원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 보육시설관련 단체의 자체 지도·감독 기능 강화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상당수가 평가 및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 때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보육시설 관련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나가서 경쟁을 통하여 민간 보육계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4. 결 론

보육전달체계는 행정 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관련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먼저 현재 심의기구인 보육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아울러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보육위원회가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보육위원회는 새로운 기구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정보센터가 독립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하고, 보육관련 정보를 각급 보육정보센터의 주된 기능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행정, 보육시설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체제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